

# 국내 법령상의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분석 연구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

조영곤\* · 이재훈\*\* · 김영준\*\*\*

I. 서론	분석
II.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1. 상법상 유사상호 규제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요	2. 분석 방법 및 결과
2.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	3. 법률 사례 분석을 통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의 용례 구별
III.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법령	4. 소결
	IV. 정리 및 시사점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변호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 변호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초록

2020년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제정·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신용정보법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마이데이터 용어의 적용 범위, 마이데이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

## I. 서론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정보(Information)’에서 ‘지식(Knowledge)’으로 옮겨가면서 데이터 정책에서도 창의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sup>1)</sup>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 산업들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신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자유롭게 경쟁하게 됨으로써 한층 더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할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

한편, 금융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 다양한 범위에서 개인의 신용데이터가 활용되었고, 개인·기업별로 활용된 데이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온 결과, 카드·보험·은행·금융투자 등 금융 관련 기업별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sup>2)</sup>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별, 시스템별로 각 보관된 자신의 신용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sup>3)</sup>

이에 정부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sup>4)</sup> 위해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였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sup>5)</sup>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1) 이재훈·김영준, “국내 법령상의 지식재산 용례 분석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 223면.

2) 구대환,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지식재산연구』, 제1권 제1호(2006), 112면.

3) 고훈경 외 2인,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BFL』, 제93호(2019), 22면.

4) 이한영, “북유럽모델 관점에 따른 마이데이터의 쟁점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7권 제3호(2020), 35면.

5)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이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만 국한되는 한계 등을 지적하거나<sup>6)</sup>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sup>7)</sup>을 제기하는 선행 연구들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으나, 필자는 신용정보법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정의하고 이 금융업종을 금융위원회의 허가 대상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sup>8)</sup>라는 용어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기존 규정	현행 규정(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신 설〉	9의2. <u>“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 가. ~ 마. (생략)
〈신 설〉	9의3. <u>“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u>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u>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u> -----.
〈신 설〉	1의4. <u>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u>
②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신용정보업, <u>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u> -----.

6) 최정민·종영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2020), 93면.

7) 고수윤 외 2인, “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집 제2호(2020), 10면.

동일한 것과 같이 입법하여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현재 다양한 정책 자료, 부처의 보도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 ‘마이데이터’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과 충돌이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만큼 범정부적 마이데이터 정책이나 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도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내 법령상의 마이데이터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등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 사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법제의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요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신용정보법은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핵심이다. 즉,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

8) 마이데이터의 법적 정의는 사실 없다. 마이데이터(MyData)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가진 데이터, 내가 가진 정보 또는, 나와 관련된 정보, 데이터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마이데이터를 그 자체로 데이터나 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떠한 서비스의 한 종류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편이다.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자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받을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하면 대출이 용이해진다.

특히 이번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된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금융 정보를 이용하려면 각 금융기업과 별도로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산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라고 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직접 로그인하여 자산관리 플랫폼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산관리 플랫폼 업체가 로그인을 대신하도록 위임을 해야 했다. 이를 통해 자산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이러한 개별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에 로그인된 소비자의 화면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sup>9)</sup>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 진입할 수 있는<sup>10)</sup>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되어 개인 금융정보 관리,

9)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긁어모은다는 뜻으로, 계좌 통합 관리(각 금융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자산을 통합해 한 번에 조회, 이체 등의 거래를 하고 관리함), 이메일 통합 조회(여러 웹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종합 확인) 등에 활용된다.

10)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최소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회사(최소 자본금 50억 원, 금

맞춤형 상품 추천, 투자 및 금융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동시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신용정보의 전송은 표준 API<sup>11)</sup> 방식 등 안전한 방식을 이용하도록 정보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소비자인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은행, 보험 등 개별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와 각 계약을 맺어 정보를 가져와야 했던 종전과 달리,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정보 통합조회,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의 주인인 각 개인에게 그들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대로 돌려주는 역할이 바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내용 등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본연의 업무인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이외에 신용관리, 정보관리, 자산관리 등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별도의 업무로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라면 별도의 금융업을 허가를 받아 겸영하는 경우에만<sup>12)</sup>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이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업 내에서 원래 이미 이러한 신용관리, 자산관리를 할 수 있었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업무범위에 추가한다면, 각 사업 영역 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금융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주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관리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선 설명을 토대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은 다음의 측면에서 그 필

---

용회사 50% 출자)에 비해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11)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전자정부법에 의거한 행정기관의 표준화된 보안모듈을 말한다.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이다.

12)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을 고유업무로 하면서 투자 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업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 행사 업무,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전기·가스·수도료 납부 정보, 세금·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신용정보법 제11조, 제11조의2 등).

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보주체가 스스로 정보이동을 요구하여 본인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현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래의 신용정보업과 구분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고부가가치의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이 형성되면서 금융 상품 간 비교·공시가 강화되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sup>13)</sup> 구체적인 예로 개정 신용정보법은 투자자문·일임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허가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고객 본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로보어드바이저<sup>14)</sup> 방식의 금융투자상품 자문이 가능해지고, 이는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일부 자산가에 대해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와 경쟁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

### (1) 미국의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과 마이데이터<sup>15)</sup>

미국은 2010년을 전후하여 정보 주체가 아닌 사업자가 개인데이터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

13) 미국은 2017년 기준 마이데이터 상위 5개 업체의 연 매출액이 약 65.9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로 인하여 각 기업에 고용된 인원도 약 1.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8).

14)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과 투자전문가의 합성어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Private Banker 대신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금융 투자 자문, 투자 일임 등까지 수행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5) 미국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요들리(Yodlee), 플레이드(Plaid) 등이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는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 민트닷컴(mint.com) 등이 있다. 플레이드는 기술을 통한 금융 서비스 대중화를 목표로 고객, 기존 금융회사, 개발자 등을 연결해주는 API 방식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미국 핀테크 회사들의 80% 이상은 고객들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서 플레이드가 제공하는 API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플레이드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강혜승,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I. 오픈뱅킹: Slowly but surely”, Global Industry Report, 미래에셋대우, 2019, 17면).

에서 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Account Information Service)’을 도입하여 다양한 핀테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에 기초한 것인 데 비해, 미국의 스마트 공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미국 연방 정부는 2010년 ‘Mydata Initiatives 2010’을 발표하고, 복잡한 정보를 소비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소비자가 표준화된 형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시라는 전자공시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중요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 에너지,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6)</sup> 개인 건강 데이터의 경우 퇴역군인, 의료보험대상자 등 개인은 의료기관 웹사이트에서 ‘Blue Button’을 클릭함으로써 의료기록에 접속하고 이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sup>17)</sup>

그 구체적인 성과로서 재향군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및 건강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Blue Button’,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Green Button’, 개인학습 자료나 학자금 지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Mydata Button’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즉, 마이데이터 정책의 범위가 신용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사업자가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 의료 정보, 교육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한을 정보 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16) Honey, Kristen et al., “My Data: Empowering All Americans with Personal Data Access”,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MARCH 15, 2016.

17)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 Health Care > Blue Button,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ttps://www.va.gov/bluebutton/>, 2021. 6. 21.;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IT.gov > Topics > Health IT in Health Care Settings > Blue Button,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ttps://www.healthit.gov/topic/health-it-initiatives/blue-button>, 2021. 6. 21.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미국에서 이러한 스마트 공시는 분야별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령, 금융 분야에서는 2010년 제정된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sup>18)</sup>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Consumer rights to access information)’를 두고 있다(12 U.S. Code § 5533). 해당 권리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비용, 요금, 사용데이터, 거래내역, 계정 관련 정보 등을 전자적 형식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소비자가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sup>19)</sup> 이러한 접근 권한을 받은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권한이 부여된다. 특징적인 부분은 신용점수 혹은 다른 위험점수, 예측변수를 도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포함한 모든 상업상 기밀정보, 사기 또는 자금세탁을 방지·감지하거나 불법적인 혹은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상품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수집된 모든 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일반적인 업무상 회수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0)</sup>

---

18) 정식명칭은 “an Act to promot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United States by improv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the financial system, to end “too big to fail”, to protect the American taxpayer by ending bailouts, to protect consumers from abusive financial services practices, and for other purposes(Pub.L. 111-203, 금융 시스템의 책임과 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미국의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고, ‘대마불사’를 끝내며, 구제금융을 종료함으로써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고, 가혹한 금융 서비스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주로 “금융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으로 번역한다.

19) (a) In general Subject to rules prescribed by the Bureau, a covered person shall make available to a consumer, upon request, information in the control or possession of the covered person concerning the consumer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that the consumer obtained from such covered person, inclu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ny transaction, series of transactions, or to the account including costs, charges and usage data. The information shall be made available in an electronic form usable by consumers.

20) (b) Exceptions A covered person may not be required by this section to make available to the consumer — (1) any confidential commercial information, including an algorithm used to derive credit scores or other risk scores or predictors; (2) any

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sup>21)</sup>(이하 “HIPAA”라 함)와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경제적 건전 및 임상 보건을 위한 건강정보기술법)<sup>22)</sup>에 근거하여 ‘Blue Button’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HIPAA의 Privacy Rule에 의하면 환자는 환자 개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정보의 사본을 점검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접근권(Right to Access)을 가진다.<sup>23)</sup> 대상 기관은 접근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에게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옵션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동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대상 기관에 지정된 기록 내에 존재하는 정보에 한한다. 동 조항의 ‘지정된 기록 세트’라 함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의료 내역, 비용 청구 사항, 추후 의료 계획, 보험금 지급 또는 의료관리기록 시스템, 대상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결정을 내렸거나 내리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45 CFR § 164.501). 또한 개인의 정보 제공 요청으로 발생하는 복제로 인한 노동력, 사본 복제에 드는 물자, 우송료, 설명문 준비비 등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도

---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covered pers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fraud or money laundering, or detecting, or making any report regarding other unlawful or potentially unlawful conduct; (3) any information required to be kept confidential by any other provision of law; or (4) any information that the covered person cannot retrieve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business with respect to that information.

21) Pub.L. 104-191,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홈페이지 한국어 공식 번역자료에서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으로 번역한다.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ocr/privacy/hipaa/understanding/consumers/ocr\\_understanding\\_hipaa\\_korean.pdf](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ocr/privacy/hipaa/understanding/consumers/ocr_understanding_hipaa_korean.pdf)>, 2021. 6. 21.

22) Pub.L. 111-5.

23) 45 CFR § 164.524 Access of individuals to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보호된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 개인은 지정된 기록 세트에 있는 개인에 대한 보호 보건 정보 사본을 검사하고 입수할 수 있는 접근권을 부여한다. … (중략)… 다만, 접근권은 다음과 같은 단서로서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며, …” 단서는 다음과 같다. (i) 심리 치료 관련 사항, (ii) 민사, 형사, 행정상의 조치 또는 절차에 관해 작성된 정보, (iii) 개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할 때 접근 거부에 동의한 경우, (iv) 타 법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보호 건강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 거부 가능, (v) 접근권이 정보의 출처를 밝힐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경우 등(미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ttps://ecfr.federalregister.gov>, 2021. 6. 21.

록 정하고 있다(45 CFR § 164.524(c)(4)).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일반에 대해 규율하는 최초의 법률인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sup>24</sup>(California Civil Code § 1798, 이하 “CCPA”라 함)를 제정하였다. CCPA는 GDPR의 영향을 받아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소비자는 개인정보 공개요구권(Right to disclose)과 접근요구권(Right to access)을 가진다.

먼저 소비자는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에게 수집 대상 정보의 범주, 출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판매하는 사업상·사업상 목적, 공유 가능한 제3자의 범위,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1798.100(a)<sup>25</sup>, 1798.110.(a)<sup>26</sup>). 그리고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수집 및 판매한 개인정보의 범주, 이를 구매한 제3자의 범위, 사업상 목적하에 공개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범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1798.100(a), 1798.115(a)<sup>27</sup>).

---

24) Assembly Bill No. 375(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720180AB375](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720180AB375), 2021. 6. 21), 주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으로 번역한다.

25) A consume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a business that collects a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e to that consumer the categories and specific piec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usiness has collected.

26) A consume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a business that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consumer disclose to the consumer the following: (1) The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it has collected about that consumer. (2) The categories of sources from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3) The business or commercial purpose for collecting or selling personal information. (4) The categories of third parties with whom the business shares personal information. (5) The specific pieces of personal information it has collected about that consumer.

27) A consume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a business that sells the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or that discloses it for a business purpose, disclose to that consumer: (1) The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business collected about the consumer. (2) The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business sold about the consumer and the categories of third parties to whom the personal information was sold, by category or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each category of third parties to whom the personal information was sold. (3) The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business disclosed about the consumer for a business purpose.

소비자는 공개 요구에서 나아가 본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소비자 본인에게 개인정보 사본을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정보를 이전하도록 하는 형태로 행사할 수 있다[§1798.100(d)<sup>28</sup>]. 정보 공개요구권이 정보 주체의 알 권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인 반면에 접근요구권은 사본을 제공받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GDPR의 데이터 이동권과 유사하다. 다만 GDPR의 데이터 이동권과 달리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CCPA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이전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 접근요구권의 행사 대상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하는데,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공개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CCPA에 따른 개인정보는 GDPR과 같이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취득한 정보이거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된 정보,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 CCPA에 따른 개인정보 접근요구권의 행사 대상은 GDPR의 인정 범위보다 넓은 범주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분석 또는 가공해서 생성한 정보에 CCPA에 따른 개인정보 접근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분명한데, 분석이나 가공을 거친 정보를 제외한, 즉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만을 접근요구권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접근요구권의 행사 방법으로는 최소한 무료의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접근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 법무부 장관은 ‘지정된 권리행사 방법’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사업자는 대상 정보를 신속하게 무료로 제공·이전하여야 한다[§1798.130. (a)<sup>29</sup>]. 다만 소비자가 명백히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과

28) A business that receives a verifiable consumer request from a consumer to access personal information shall promptly take steps to disclose and deliver, free of charge to the consumer, the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section. The information may be delivered by mail or electronically, and if provided electronically, the information shall be in a portable and, to the extent technically feasible, readily useable format that allows the consumer to transmit this information to another entity without hindrance.

도한 요구(manifestly unfounded or excessive request)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소비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1798.145(g)(3)<sup>30</sup>). 특히 접근요구권은 12개월 동안 2회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GDPR의 이동권과 차이가 있다(§1798.100(d)<sup>31</sup>).<sup>32</sup>

## (2) 유럽의 GDPR과 마이데이터<sup>33</sup>)

GDPR 제20조는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i) 정보주체가

---

29) In order to comply with Sections 1798.100, 1798.105, 1798.110, 1798.115, and 1798.125, a business shall, in a form that is reasonably accessible to consumers: (1) (A) Make available to consumers two or more designated methods for submitting requests for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pursuant to Sections 1798.110 and 1798.115, including, at a minimum, a toll-free telephone number. A business that operates exclusively online and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a consumer from whom it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shall only be required to provide an email address for submitting requests for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pursuant to Sections 1798.110 and 1798.115. (B) If the business maintains an internet website, make the internet website available to consumers to submit requests for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pursuant to Sections 1798.110 and 1798.115. (2) Disclose and deliver the required information to a consumer free of charge within 45 days of receiving a verifiable consumer request from the consumer.

30) If requests from a consumer are manifestly unfounded or excessive, in particular because of their repetitive character, a business may either charge a reasonable fee, taking into account the administrative costs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communication or taking the action requested, or refuse to act on the request and notify the consumer of the reason for refusing the request.

31) A business may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a consumer at any time,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a consumer more than twice in a 12-month period.

32) 정원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성균관법학』, 제32권 제2호(2020), 89-91면.

33) 영국에서는 마이덱스(mydex), 야필리(Yapily) 등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추세이다. 가령, 마이덱스는 금융 분야의 신용정보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일반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수집·관리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연결된 기업과 공유한다. PDS와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개인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공유를 지원한다. 개인 대상 서비스는 개인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와 마이덱스에 연결된 일반 기업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 기업들은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개인이 공유 설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이덱스를 활용하여 구축한 효과를 누린다.

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수령하거나, ii) 정보주체가 직접 해당 사업자가 가진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데이터 이동권은 i)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6.1.(a)], ii) 특정 범주의 데이터인 경우 반드시 명백한 동의에 근거하거나[§9.2.(a)], iii) 정보주체가 사업자와의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체결 전 요청한 경우[§6.1.(a)] 등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 이동권은 GDPR 제17조상의 삭제권(Right to erasure)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GDPR §20.3).<sup>34)</sup>

한편 2017년 4월 5일 EU 제29조 작업반(WP29, Article 29 Working Party)은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발표하여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이동권의 핵심 요소, 이동권이 적용되는 상황, 정보주체의 이동권 통제를 위한 일반 원칙,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 및 방법 등에 대해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를 수령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요청할 권리, 정보주체가 가진 통제권(controller-ship) 등을 데이터 이동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데이터를 수령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개인 기기나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 둘째, 정보주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이전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GDPR 전문 제68항에서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상호운용 가능한 형식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데이터 처리 시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사업자는 데이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GDPR 제20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데이터 이동에 관한 요구에 응할

34) EUROPA > EUR-Lex home > EUR-Lex-32016R0679-E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6R0679&qid=1624283469779>, 2021. 6. 21).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의 기업이 기업의 정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자에게는 전송되는 정보가 자신의 것임을 보장하는 동의나 확인 등의 안전 절차를 설정하도록 권장한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GDPR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어야 하나, 사업자에게 데이터 전송 이전에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잠재적인 데이터 이동 요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법정 보관 기간(retention period)을 초과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데이터를 받는 새로운 제3의 기업에게는 요청 내용에 비해 과도한 데이터인지, 또는 요청 내용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만약 해당 데이터를 받는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즉, 새로운 처리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데이터를 반드시 수용하거나 처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sup>35)</sup>

GDPR의 채택으로 인해 EU회원국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독일은 가장 먼저 GDPR을 반영한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2017년에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독일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국제적 기준에 최대한 부합한 국내법을 마련함으로써 자국민과 자국기업에게 범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프랑스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이 중심이 되어 GDPR 전면 시행에 대해 준비해 왔다.<sup>36)</sup>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 BDSG, 이하 BDSG)<sup>37)</sup>은

35) 정원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성균관법학』, 제32권 제2호(2020), 87-88면.

36) 프랑스는 현재 지나치게 엄격한 자신들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GDPR 수준에 맞추어 점차 개별적으로 정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선기·고영미,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43권 제1호(2019), 329면; 프랑스는 2016년에 의결된 GDPR의 발효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 7일 디지털공화국에 관한 법률(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을 제정하였다. 권건보 외 2인,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2018), 27면.

37) EU의 GDPR이 제정된 이후 독일에서는 2017년 6월 일괄 개정법률인 “EU 데이터보호 적용 및 구현을 위한 법률(DSAnpUG-EU)”을 통하여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BDSG가 개정되면 다른 법률들도 이에 부수하여 같이 개정된다. 2017년 개정된 BDSG는 전체 4부, 19장, 2절, 85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일반규정, 제2부는 GDPR의 이행 규정들, 제3부는 형사사법지침 2016/680/EU의 이행 규정들, 제4부는 GDPR과 형사사법지침 2016/680/EU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처리를 위한 특별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BDSG는 처음부터 GDPR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국제적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내법을 마련함으로써 자국민과 자국기업에게 국제규범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GDPR이 회원국에게 위임해 놓은 입법재량사항에 대해 거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GDPR이 제시하는 바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직접적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GDPR과 2017년 개정된 연방정보보호법(BDSG)에서도 정보주체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민감정보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음으로써 그 남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GDPR에서 입법재량으로 남긴 기존의 다른 분야는 거의 그대로 직접적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2부인 GDPR 이행규정인 제22조에서 제44조에는 거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반면에 민감정보의 경우 제22조부터 28조에 이르기까지 관련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부의 형사사법지침 이행 규정 파트에서도 제46조의 개념규정에서 재차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48조에서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개정된 독일의 BDSG에 이렇게 많은 민감정보 규정을 둔 이유는 GDPR이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입법재량을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38)</sup>

참고로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 Data Protection Act 2018(이

schutzgesetz: BDSG)을 개정하였다(buzer.de, <https://www.buzer.de/gesetz/3669/1.htm>, 2021. 6. 21); 권건보 외 2인,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2018), 25면.

38) 홍선기 · 고영미,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43권 제1호(2019), 320-322면.

하 “DPA”라 함)은 데이터 이동권에 관하여 GDPR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DPA §1(2)).<sup>39)</sup> 그러나 마이데이터는 그보다 먼저인 2013년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sup>40)</sup>(이하 “ERRA”라 함)를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동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동가능한 안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고객에게 이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ERRA §89-91).

이 법은 법률상의 의무사업자를 금융, 에너지, 통신 등 특정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입법의 취지가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기업규제 환경 개선에 있는 점, 고객에게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실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으로 비추어보아 개인이 아닌 기업 간 데이터 유통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영국 ERRA의 정보 이전 의무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보해주려는 것과는 그 도입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보 유무와 별개로 단순히 금융 분야, 즉 신용정보에만 국한하여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광범위한 범주를 모두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로 포섭하고 있다.

### (3) 일본의 ‘정보은행(情報銀行)’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는 개인일지는 몰라도, 생산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기업, 기관 등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업, 기관 등이 수집한 개인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시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일본 주요 100대 기업 중 약 50개의 기업이 정보 제공처나 제공 목적을 구체

---

39) UK Public General Acts >2018 c. 12 > Table of contents, Data Protection Act 2018(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12/contents>, 2021. 6. 21).

40) UK Public General Acts >2013 c. 24 > Table of content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3/24/contents>, 2021. 6. 21). 주로 “기업규제개혁법”으로 번역한다.

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제3의 기업 등에게 제공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특히 개인에게는 동의 철회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마련해 놓지 않았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16년 12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데이터 유통을(환경 정비) 위한 PDS(Personal Data Store)와 정보은행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에서 데이터 거래시장을 조성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보 보유자와 정보 이용자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를 만든다. 데이터 거래시장은 정보의 수급, 가격의 형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활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익명처리 데이터나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데이터로 제한된다.

다음으로 PDS는 기관이나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각 소비자 개별 정보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PDS는 개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정보은행에 제공된다. 데이터 관리, 제3자 제공, 데이터 활용 등을 하는 곳이 바로 정보은행이다.

일본은 이와 같이 개인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정보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sup>41)</sup> 정보은행은 개인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PDS 시스템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제3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보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이는 정보은행의 정보수탁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소비자와 정보은행 사이에 정보은행이 그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계약

41) 이윤정, “일본 정보은행 인정 제도”, KISA Report(제7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2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정보은행 사업의 인증 현황 및 기타 추진 사례”, 11월 4주(격주간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2면.

이 체결되면, 정보은행의 PDS를 통해 개별 소비자의 정보가 관리되고, 정보은행은 정보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보은행의 수익 구조다.

일본에서의 마이데이터 규제는 국내 규제와의 차이점이 있다. 일본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본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본인 식별 데이터의 개시(開示<sup>42)</sup>)를 기업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범위는 신용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 상의 정보이동권은 본인의 정보를 허가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만 보낼 수 있는 권리이고, 일본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다른 기업, 즉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청구할 권리는 없다. 다만 일본에서도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4) 우리나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주요국 마이데이터와의 관계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면, 마이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그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신용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일반 개인인 개인정보주체의 정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통합된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적 신산업 창출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용어는 아니다. 본래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정보주체 중심으로 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 분야에 적용가능하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에너지, 의료, 금융 등에 대해 시범사업 등 마이데이터 산업을 확대하다가, 이번 데이터 3

---

42) 우리나라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에 대한 이동 요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우선 금융 분야에 대해서만 제도화되었다.<sup>43)</sup> 이에 우리나라는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자산 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관리업만 당장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 제12조를 개정하여 다른 분야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마이데이터(MyData)와 동일한 문자 및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다.<sup>44)</sup> 이를 어긴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up>45)</sup>

물론,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통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의 예외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에 필요한 경우로 국한한 상태에서 중앙 부처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이데이터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신용정보”라 함)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

43) 관계부처 합동 2019. 1. 16., 혁신성장 전략투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2019년~2023년).

44) 신용정보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 신용조사· 개인신용평가· 신용관리· 마이데이터(MyData)· 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5) 신용정보법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 신용조사· 개인신용평가· 신용관리· 마이데이터(MyData)· 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하 생략).

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 내 포함된 신용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가령, 현재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전자화폐나 포인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모두 본인신용정보에 포함되어, 마이데이터 유사명칭을 사용하려면 본인신용정보 일체를 수집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는데, 문제는 에너지나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유사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데이터가 본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의 본인신용정보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sup>46)</sup>”도 포함되는바, 이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정보법 내에서의 다양한 신용정보 관련 업종 간의 명확한 분류를 위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어느 정도 분야의 특성상 필요한 측면도 인정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고 이를 통해 개인에게 다양한 분석 결과 및 컨설팅을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전 분야에 대해 신용정보법의 관점에서만 업종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 Ⅲ.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법령 분석

#### 1. 상법상 유사상호 규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법령 분석은 기본적 법률규제라 할 수 있는 상법상 유사상호 규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18조에서는 상

46) 아직 고시된 내용은 없다.

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호선정의 자유를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22조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호 등기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등기한 상호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상호에 관한 법적 규율에서는 이처럼 상인의 편의와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라는 두 개의 요청을 조정하여야 한다.<sup>47)</sup> 이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sup>48)</sup>

## 2. 분석 방법 및 결과

실제 우리나라 현행 법령을 분석하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고, 실제 법령별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법상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 현행 법령<sup>49)</sup>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였다.

47) 김재두, “상호의 보호에 관한 법적 소고”, 『경영법률』, 제30집 제3호(2020), 222면.

48)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1)-1)에서 소개한다.

49) 본 논문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부령(시행규칙)을 의미한다.

〈표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을 두고 있는 법률(소관 부처별)

소관 부처	법률명	법률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후준비 지원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교육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직과병원 설치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직과병원 설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7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국립항공박물관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택도시보증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부동산원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항공안전기술원법, 해외건설 촉진법	1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공사용제조합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14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어촌·어항법, 염업조합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공사법	11
여성가족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특별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	9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문화체육 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경륜·경정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생활체육진흥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한국관광공사법	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기술사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우편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7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마사회법	7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7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6
중소벤처 기업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6
법무부	교정공제회법, 법률구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한국법학원 육성법	5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한국은행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4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아프리카재단법	4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기본법	3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군인공제회법, 한국국방연구원법	3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3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

경찰청	경찰공제회법, 도로교통법	2
대통령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국회사무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1
특허청	변리사법	1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법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1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
	총 계	194

총 194개의 국내 현행 법률에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50)</sup>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특정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법률에서 그 특정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 특별법 형태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

50) 법률에서만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확인되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기관 등을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기관은 유일하게 하나로서 그 역할이 부여되는바, 유사한 표현이 사용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특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보호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자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누군가가 임의로 부여할 수 없게 하여 사회적으로 유사 자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허가 등을 받은 특정 사업자의 업무 영역 보호를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 3. 법률 사례 분석을 통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의 용례 구별

(1) 기관 설립 근거 법률 내 해당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 1) 경찰공제회법 제6조<sup>51)</sup>

이 법률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경찰공제회법 제6조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축조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4조에는 동법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법인의 설립을 위한 법률 내에 그 특정 법인을 위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은 앞선 총 207개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축조되는 편이다.

51) 경찰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참고로, 특정 법인을 위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과 유사하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나목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해당 상호나 표장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52)</sup>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 등을 통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sup>53)</sup>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국립대학병원<sup>54)</sup>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앞선 경찰공제회법과 유사한 형태로 조문이 구

52) 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

5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 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54) 서울대학교병원은 별도의 법률이 있어 해당 법에서 제외한다.

성되어 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축조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5조는 동법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사명칭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의 유사 명칭 여부가 다툰이 된 사건<sup>55)</sup>에서는 “공인회계사의 명칭에서 ‘공인’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요부분은 회계사라는 명칭이라고 할 것이고,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은 ‘회계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회계’와 ‘사’자가 들어감으로써 공인회계사라는 명칭과 주요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고 기술하면서 회계관리라는 말에는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여 유사한 명칭으로 보았다.

반면, 동물병원과 가축원이 유사한 명칭인지를 판단한 사례<sup>56)</sup>에서는 “개의 매매, 교미, 교환 등의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가축원이라는 상호는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sup>57)</sup>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유사한 명칭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 (2)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상 설치되는 위원회 및 기관 등의 보호를 위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특별법 제28조<sup>58)</sup>

이 법률은 세계잰버리<sup>59)</sup>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3 새만금

55) 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

56) 서울지방법원 1984. 8. 22 선고 84노1910 판결.

57)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은 1999년부터 삭제된 상태이다. 1984년 당시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해 벌금 조항이 있었다(당시 수의사법 제39조).

5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특별법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축조되어 있으며, 동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한 법률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입법례로, 대회 명칭 등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등 여러 지원 특별법상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명칭에 관한 사항을 더 구체화하여 보호하기도 한다.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올림픽 및 패럴림픽 표장법’(Olympic and Paralympic Marks Act, ‘OPMA’)을 제정한 바 있는데, OPMA 제4조는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나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가 캐나다올림픽위원회 및 캐나다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 인가, 보증 기타 어떠한 종류의 관련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영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비하여 ‘런던올림픽 및 패럴림픽법’(The London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ct, ‘LOPA’)과 ‘광고 및 거리판매에 대한 규칙’(Advertising and Street Trading Regulations, ‘ASTR’)을 제정하였는데, LOPA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런던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 상징, 표장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히 ‘Games’, ‘Two Thousand and Twelve’, ‘2012’, ‘Twenty Twelve’ 중 2개 이상을 함께 사용하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와 ‘Gold’, ‘Silver’, ‘Bronze’,

59)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 14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행사로, 타국의 청소년과 교류하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자립심과 협동능력을 발달시켜 장차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하였다.

‘London’, ‘Medals’, ‘Sponsor’, ‘Summer’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ASTR은 올림픽 개막 2주 전(2012. 7. 13.)부터 패럴림픽 폐막 5일 후(2012. 9. 14.)까지 경기장 주변 또는 사이클이나 마라톤 코스 등 경기진행도로 주변 등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광고나 관측행위를 금지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 28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영국 런던올림픽 당시 광고에 ‘2012 London’이라 쓸 경우 LOPA 위반이 되었지만 ‘2023 새만금’이라고 쓸 경우에는 현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sup>60)</sup>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이와 같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표현 그 자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한 경우로 한정하는 배타적인 사용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여

60)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은 실익이 있다.

가령,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82 판결에 따르면, “전도관이라는 명칭은 교리의 전도 예배 등 종교적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고유명사가 아닌 만큼 … (중략) … 그러한 고유명사 아닌 전도관이라는 명사의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인즉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 (중략) …”라고 하고 있으므로, 전도관의 경우와 같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 (3) 특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보호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

#### 1) 공인회계사법 제11조<sup>61)</sup>

이 법률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공인회계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축조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4조에는 동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sup>62)</sup>는 공인회계사법 제11조는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61) 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2) 헌법재판소 2020. 9. 24 자 2017헌바412 결정.

해 회계 관련 사무를 ‘공인된 자격을 갖춘 자’, 즉 공인회계사에게 독점적으로 맡기고, 위 공인회계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명칭사칭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 2) 세무사법 제20조<sup>63)</sup>

이 법률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세무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축조되어 있으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제22조의2에는 동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sup>64)</sup>는 공인회계사법에 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결정과 유사하게,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관해서도 입법목적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하였다. 국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면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자격자를 정하고, 그 자격자에 한하여 이를 표시하는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명칭사용자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은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자의 전문성에 대한 강

63)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64) 헌법재판소 2008. 5. 29 자 2007헌마248 결정.

력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그 신뢰에 부합하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자격명칭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 (4)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축조되어 있으며, 동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제75조에는 동법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 전자등록이란 주식 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전자등록기관은 이러한 전자등록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규정에서는 앞선 분류에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와는 달리, 전자등록기관이라는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가 ‘증권등록’, ‘등록결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등록결제’와 유사한 명칭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은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다소의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어느 정도의 유형화된 표현 내지 포괄적인 표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명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4. 소 결

마이데이터(MyData) 관련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의 경우는, 앞선 용례 중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신용정보법 제12조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축조되어 있으며, 동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개인신용평가·신용관리·마이데이터(MyData)·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제52조에서는 동법 제12조를 위반한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다른 유형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는 달리, 허가 대상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데서 나아가 ‘마이데이터(MyData)’라는 명칭까지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신용정보가 아닌 의료정보 또는 에너지정보에 관한 본인 정보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정보를 활용한 유사한 업무 수행인지가 불명확하며, 이와 같이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에 두면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면 대통령령

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률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추후 법률 위입범위의 일탈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크다.

또한 해당 규정은 마이데이터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와 비슷한 문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명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사용자를 신용정보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사용한 ‘명칭’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명칭 사용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명칭’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을 감안하면,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보유하거나 나와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오히려 이를 신용정보로만 국한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마이데이터’에 관한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범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한다.

유사한 명칭에 대해 어떠한 명칭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이데이터’라는 표현 자체가 외래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상황이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마이데이터의 의미를 신용정보로만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금지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법의 마이데이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관한 것이므로 신용정보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혼란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 곧 신용정보법이 적용될 수 없는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는 신용정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등 다른 분야에서도 모두 발생

하는 문제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허가를 받아야만, 마이데이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며,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①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인지 여부의 불명확성, ②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주체의 모호성이 불거질 여지가 크며, 이는 신용정보, 개인정보 등 정보 간의 모호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입법자의 관점에서는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측면을 중요시하여 해당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상호 및 명칭이 존재하고 복잡화, 다변화된 사회에서 특정 분야 중 일부 허가업에 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너무 확장할 경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 IV. 정리 및 시사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게 되는데, 주요국의 유사한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마이데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마이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그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신용정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즉,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것은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용어는 아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중심의 정보 통합관리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 분야에 적용가능하나, 우선 금융 분야에 대해서만 제도화된 것이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 내 포함된 신용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가령, 현재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전자화폐나 포인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모두 본인신용정보에 포함되어, 마이데이터 유사명칭을 사용하려면 본인신용정보 일체를 수집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는데, 문제는 에너지나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유사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데이터가 본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 우리나라 현행 법령을 분석하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고, 실제 법령별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 사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법제의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현행 194개의 법령에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 207개를 확인하였다. 법령 본문 내 문구의 표현 형식 등을 기준으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의 용례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일부 법령을 사례화하였다.

첫째, 특정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법률에서 그 특정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 같이 특정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률 내에 그 특정기관을 위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은 총 207개 조항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특별법 형태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기관 등을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기관은 유일하게 하나로서 그 역할이 부여되는바, 유사한 표현이 사용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특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보호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자격명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누군가가 임의로 부여할 수 없게 하여 사회적으로 유사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허가 등을 받은 특정 사업자의 업무 영역 보호를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얻은 정책적·입법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동일한 명칭을 포함하여 유사한 명칭까지 사용을 금지하려면 유사한 명칭 사용에 관한 사회적 상황,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마이데이터에 대한 유사한 명칭이 무엇인지 일반인의 상식으로 예측이 쉽지 않다. 마이데이터에 관한 조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범위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은 추후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법자의 관점에서는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강한 법적 보호 측면에서 해당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상호 및 명칭이 존재하고 복잡화, 다변화된 사회에서 특정 분야 중 일부 허가업에 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조문들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은 마이데이터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도입과정에서 선행적으로 분석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관련한 정책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데이터가 자본인 시대를 맞아 금융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산업 전반에서 마이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선 신용정보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본문 및 같은 법 제52조(과태료) 제2항 제1호에서 “마이데이터(MyData)” 부분을 삭제하고, 마이데이터를 일반적인 용어로서 어느 분야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가 이후 국내 법령의 제·개정, 입법 및 각종 정책 자료로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국내 및 동양)>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대한민국정부, 2018.

### <학술지(국내 및 동양)>

고수윤 외 2인, “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집 제2호(2020).

고환경 외 2인,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BFL』, 제93호(201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구대환, “현행 저작권법과 유류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지식재산연구』, 제1권 제1호(2006).

권건보 외 2인,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2018).

김재두, “상호의 보호에 관한 법적 소고”, 『경영법률』, 제30집 제3호(2020).

김동근·홍춘외,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2020).

박진아, “데이터의 보호 및 유통 법제 정립 방안”,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2020).

설민수, “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2020).

이대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 통지와 동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2015).

이양복, “데이터 3법의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2020).

이재훈·김영준, “국내 법령상의 지식재산 용례 분석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

이한영, “복유류모델 관점에 따른 마이데이터의 쟁점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7권 제3호(2020).

정원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성균관법학』, 제32권 제2호(2020).

최정민·종영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2020).

홍선기·고영미,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43권 제1호(2019).

〈기타 자료〉

강혜승,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I. 오픈뱅킹: Slowly but surely”, Global Industry Report, 미래에셋대우,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료이력부터 생활습관까지 마이데이터로 편리하게 건강관리, 에너지 마이데이터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절감 — 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의료정보 활용하여 질병 위험 예측하고, 편리한 건강관리, 내 교통이용 내역 제공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선정”,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합동 보도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

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8.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8.

금융위원회,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 발표자료, 금융위원회, 2020.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115호, 금융위원회, 2020.

금융감독원,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 발표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 2020.

이윤정, “일본 정보은행 인정 제도”, KISA Report(제7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KISTEP 이슈페이퍼(통권 제281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정보은행 사업의 인증 현황 및 기타 추진 사례”, 2020년 11월 4주(격주간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 An Analysis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in Domestic Laws —Focusing on My Data in the Financial Sector—

Cho, younggon; Lee, Jaehoon & Kim, Youngjun

In 2020, Korea established its own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to advance the regulatory system for credit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as data industries in the financial sector. However,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exclusive use of the term “My Data” that can be commonly used because the “My Data” industry is defined as the same meaning as the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in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MyData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in Korea, and analyzed the prohibition of using similar terms in relation to the ‘MyData’ similar terms prohibited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such as creating and utilizing new values of data.

194 out of over 1,500 domestic laws, established “no use of similar names” regulations and a total of 207 “no use of similar names” clauses were found. 207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four. As a result of the usage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legislation improvement should be made

when the Credit Information Act restricted the use of MyData as a credit information because MyData is not limited to the financial sector.

Keyword

Coverage of the prohibition clause on use of similar names,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similar name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Coverage of MyData Terms,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mydata similar names, Exclusive use of MyData terms